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2595호)

제 안 설 명



2021.09.07.

서울특별시 의원 오 중 석 (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)

-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!
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오중석 의원입니다.
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와 협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현행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,
 자치구 관련 사항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출석과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
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
-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시민들이 도시계획 심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안건 소관 구청장이 참석을 원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

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.

- 더불어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